#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과제
# (建築歷史文化環境의 保全과 復元의 課題)

李 相 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目 次

Ⅰ. 緖 論
Ⅱ. 本 論
1. 建築文化財의 解體 修理와 復元 問題
2. 建築歷史文化環境址의 遺構 發掘과 復元 問題
3. 建築歷史文化環境의 管理와 新築 및 觀光地化 問題
4. 建築歷史文化環境의 保全과 都市設計 問題
5. 建築歷史文化環境 保全의 槪念 擴大 必要性
Ⅲ. 結論 : 建築歷史文化環境의 保全과 復元의 課題

## Ⅰ. 緖 論(서 론)

문화재(文化財)는 "우리 민족(民族)이 이룩한 (광의(廣義)로 인류(人類)가 이룩한)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모든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을 포괄하는 '보존(保存)할 만한 가치(價値)가 있는 문화(文化) 유산(遺産)'을 지칭한다."[1]

특히 "우리가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는 것은 그것이 죽은 물건이 되지 않고 잊어버린 물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2]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인 문화재는 거기에 소속(所屬)된 집단(集團)이나 개인(個人)에 의하여 전승(傳承)됨으로써 역사성(歷史性)을 지니며 동시에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화재의 이러한 현재적(現在的)인 역할과 크게 상관한다.

주지하듯이 우리 나라의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는 현재 크게 보아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및 「전통건조물보존법(傳統建造物保存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 1962년 1월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개체만을 보존 보호하려는, 즉 원형보존의 개념이 엄격한 반면, 1984년 12월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법」은 개체문화재인 전통건조물 및 그 구역도 보호 보존하자는 것으로서, 점적(點的)인 보호에서 면적(面的)인 보존으로 확대한 개념을 바탕에 깔고 제정된 도시(都市), 환경적(環境的)인 의미의 법이라고 이미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여 강조되어 왔다.[3] 이는 이들 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

1)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1984, p.5.
2) 김원룡 : 「올바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창간호 제1권 제1호, 1965, p.9.

화재 및 문화재보존지구를 현재(現在)와 연관(聯關)되게 활기(活氣)있게 하는 것도 중요함을 뜻한다. E. H. Carr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것도 역사는 항상 현재와 연관되어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새롭게 평가받고 씌어져야 하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건조물(建造物)이 문화재(文化財)로서 갖는 일차적(一次的)인 가치(價値)도 현재적(現在的)인 대화(對話)를 할 때 빛을 발한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자세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따르는 과제에 대하여는 이미 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 의하여 그 견해가 피력되어 왔다.

예로서, 정재훈 선생은 "문화재(文化財)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문화(文化)의 생명소(生命素)가 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문화재관리란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에 계승 창달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고유 문화의 생명소를 파악하여야 새 문화창조의 방향이 제시된다...그러나 여기에 맹목적인 전통의 환원이나 하여 잘못하면 복고취미(復古趣味)의 보수관(保守觀)에 도달하여 옛것의 모방(模倣)에 치우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창조(創造)가 아니라 문화(文化)의 후퇴(後退)다. 이러한 제 문제점은 새로운 창조의 방향에서 엄밀히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관리의 가장 최종적인 것이며 진정한 민족문화의 핵심체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계승하는 길이다."라고 하며 문화재관리관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4)]

이 글은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 중에서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 및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과 복원(復元)에 따른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실례를 통하여 논의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썼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문화재란「문화재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한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에 속하는 건조물(建造物)을 뜻한다.

## Ⅱ. 본론(本論)

### 1.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의 해체수리(解體修理)와 복원문제(復元問題)

이미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 복원(復元)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덜하였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경북 안동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의 해체(解體) 수리(修理) 결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건축문화재에 대한 해체 수리 및 복원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봉정사 극락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현존 한국 최고(最高)의 목조건물(木造建物)이다. 해체(解體) 복원전(復元前) 봉정사 극락전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정면 3간 모두에 들쇠를 달아 매달게 된 띠살의 사분합문(四分閤門)이었고 건물 내부(內部)와 전면(前面)에는 각각 마루와 툇마루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해체수리된 건물은 현황과 같이 벽체를 치고 어간(御間)에는 판문(板門)을, 좌우 협간(夾間)에는 살창을 달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벽체로 처리한 모습으로 되었다. 그 이유는 해체과정에서 "어간(御間)에 신(新)방목과 신방석이 노출되어 판문형태의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좌우 협간에는 인방(引枋)에 남아있는 흠으로 보아 당초에는 살창이 있었던 건물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체수리"하면서 현재와 같이 "복원"한 것으로 풀이된다.[5)]

---

3) 「문화재보호법」과「전통건조물보존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상 실은 문화재보호법은 성격상 문화재보존법,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 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 합당하다.

4) 정재훈 : 「문화재관리 행정의 기본방향」,『문화재』, 제4호, 1969, p.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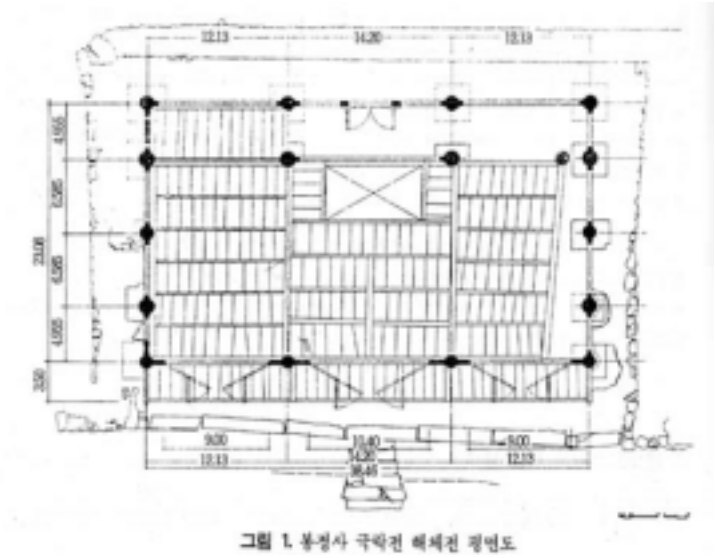

그림 1. 봉정사 극락전 해체 전 평면도

봉정사 극락전의 해체수리 결과에 대하여는 이미 주남철 교수가 “...해체 복원상의 문제를 생각케 해준다.”[6]고 지적하였듯이 건축문화재의 복원에 대한 몇 가지 논의의 대상을 제공한다.

건축문화재의 복원이란 곧 원래(原來)의 모습대로 회복(回復)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면 그 원형(原形)에 대한 철저한 파악(把握)이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원형에 대한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는 쉽지가 않다. 「문화재관리 실무편람」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하여, “마모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조사하고 실측 설계하여 옛 기법을 좇아 수선(修繕) 복원(復元)(중건(重建))하고 조경(造景) 등 주위 환경을 정비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수(補修) 정비(整備)라 한다.”고 정이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는 이를 ‘수리(修理)’로 규정하고, “문화재의 보수(補修) 복원(復原) 및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損傷)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7]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건축문화재 해체 수리는 현시점에서 그 현황을 잘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를 해체 또는 분해한 다음 보수 정비하며 후세에 그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원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단서(端緖)를 바탕으로 원형(原形)을 가정(假定)하여 “복원(復元)”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는 원형에 대한 파악이 “불완전(不完全)” 할 때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해체 수리하여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완벽한 원형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 건조물에 대한 어느 시기를 설정한 복원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다만 가장 원래 모습에 가까운 상

5) 이 내용에 대하여는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鳳停寺 極樂殿 修理 工事報告書』, 1992, p.43에 기술되어 있다.
6) 주남철, 『韓國建築美』, 일지사, 1983, p.247.
7) 문화재관리국 : 앞의 책, p.110.

태를 추정하는 “복원적(復元的) 고찰(考察)”을 하고 “복원도(復元圖)”를 작성할 수는 있다. 따라서 극락전을 원형대로 “복원”하려고 하였다면 해체 수리 후 발견된 내용들을 자료로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겨둔 채 좀더 시간을 두고 원형에 대한 연구를 한 후 복원에 대한 단안을 내렸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 관리에 따르는 해체 수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함을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원형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정확한 기록을 남겨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책이다. 과거 어느 시기에 있었을 법한 이상적(理想的)인(ideal) 모습을 추정하는 것과 어느 특정건물의 실제적(實際的)인(real) 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 그 시기에 있었음직한 이상적인 표준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재 복원이 아니다. 좀 더 비약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목조건축(木造建築)의 복원(復元)은 실제로 가능한 행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비올레-르-듀크(Violet le Duc 1814-1879)가 프랑스의 역사적 문화재들을 임의대로 모양을 바꾸거나 새것을 첨가하여 복원한 것에 반하여, 윌리암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가 듀크류의 단장식 보수, 복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존 상태의 유적들을 자연의 풍우로부터만 보호할 것을 제창한데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8)]

하나의 건축물 내지 그 집합은 어느 특정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하여 지어지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또 그렇게 지어지고 배치된 당위성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시대와 함께 하는 생명력을 지니는 건축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봉정사 극락전 해체 수리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다.

극락전이 해체 수리될 당시 봉정사 일곽의 건축모습을 살펴보면, 모든 건축은 중정을 중심으로 몇 개의 구역을 형성하면서 배치되어 있고, 전체공간을 얽어매며 일관성있게 흐름을 유도하는 것은 건물과 중정 사이를 매개시키는 툇마루임을 알 수 있다. 이 툇마루는 봉정사 건축의 맥락(脈絡)(context)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리고 그것은 긴 시간을 두고 형성(形成)된 봉정사 건축의 필연적(必然的)인 결과물(結果物)로서 우리나라 불교사찰건축(佛敎寺刹建築) 배치(配置)의 변천과정 한 단면을 읽게 하여 준다.

주지하듯이 실제로 우리 나라 사찰건축은 고려시기를 지나 조선시기를 거치면서 전체 배치 구성방식이 크게 변한다. 중심 구성축이 설정되면, 대웅전, 웅진전 등으로 불리는 중심전각이 사찰 뒤에 배치하게 되고, 만세루, 보제루 등 루각은 본전 앞으로 온다. 초기 형식에서 볼 수 있는 금당(金堂)이 중심에 놓이고 강당(講堂)이 뒤에 놓이는 형식에서 강당이 금당에서 그 기능이 합쳐지거나 금당 앞 루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가 되면 사찰 진입축(進入軸)이 길어지면서 중심축(中心軸)을 따라 앞에서부터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같은 문들이 세워지고 그 뒤로 루각과 본전이 놓여지는 배치를 하기도 한다. 평지(平地) 사찰배치(寺刹配置)에 많이 사용되던 회랑(回廊)이 없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찰 배치방식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봉정사에서 설정된 툇마루도 이러한 흐름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등도해치랑(藤島亥治郞)이 1934년 발표한 봉정사 배치약도(그림 2)에 의하면 극락전, 고금당, 대웅전, 요사에는 툇마루가 있고, 덕휘루(德輝樓)와 대웅전(大雄殿)사이에는 그

8)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안압지를 발굴한 후 그 당시 관계당국은 서둘러서 안압지 주변에 “신라시대”건물들을 “복원”하지 말았어야 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후대에 더 나은 추정 “복원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E. Viollet-le-Duc: On Restoration, London: Sampson Low, Marston, Low and Searle, 1875, p.9., John Ruskin: Seven Lamps of Architecture.

시기에 조영한 진여문(眞如門)이 있으며, 극락전 중정 건너 남쪽으로는 우화루(雨花樓)가 서 있는데, 이는 봉정사 배치형식을 읽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9] 진여문, 우화루에 의하여 대웅전, 극락전 두 구역이 구분되는 독립된 성격은 완연해지지만 건물사이 공간의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툇마루이다. 사실 복원된 지금의 극락전은 고금당과 함께 봉정사 배치에서 읽을 수 있는 건축형식의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며 낯설게 들어 서 있는 건물과 같다는 인상을 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웅전이 해체수리되면서 대웅전 앞 툇마루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수리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기도 하다(사진 1참조).

그림 2. 등도해치랑(藤島亥治郎)의 봉정사 배치 약도.

사실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의 복원(復元)이란 어느 특정(特定)한 시기(時機)의 건물(建物) 모습으로 회복(回復)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그 건물을 어느 시기의 건물로 환원시켜 복원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1972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복원(復元)"공사를 한 경주 불국사(佛國寺)는 대조적인 면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불국사 건물중 대웅전, 자하문, 극락전 등이 통일신라시대 김대성에 의해 창건될 당시의 기단 위에 중건된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건축양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불국사 전면 석축부와 다보탑, 석가탑은 창건당시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원된 회랑과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등은 이른바 다포계 형식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하지 않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불국사 모습으로 복구(復舊)한 것이다. 더구나 석축(石築) 전면(前面)의 구품연지(九品蓮池)는 그 유구가 확인되었으면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불국사 건축의 현존건물과 전체 배치에서 읽을 수 있는 건축적 맥락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수반하는 건축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이해가 뒤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鳳停寺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1992, p.56.

## 2. 건축역사문화환경지(建築歷史文化環境址)의 유구발굴(遺構發掘)과 복원문제(復元問題)

전북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조사로 그 배치형식이 파악되었으며, 발굴작업과 함께 동탑지(東塔址)에는 발굴된 부재들을 근거로 하여 동탑이 "복원(復元)"되었다. 이 내용은 유구(遺舊)의 발굴(發掘)과 이에 따른 문화재의 복원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사진 2참조).

동탑지(東塔址)는 1974년부터 2차에 걸친 원광대학교(圓光大學校) 마한백제문화연구소(馬韓百濟文化硏究所)의 발굴조사로 동탑지가 서탑지(西塔址)의 규모와 동일한 탑지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때 이 동탑에 대한 복원계획을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바 있었으나 관련학자들에 의하여 동탑의 복원은 사지(寺址) 전체의 규모가 밝혀진 다음 복원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의해 일단 중지되었다고 한다. 문화재관리국에 의하여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된 1980년부터 동탑지 주변에서 1,200여 점에 달하는 석탑(石塔)부재가 다량 출토됨으로써 동탑복원에 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미륵사지(彌勒寺址) 종합정비사업계획(綜合整備事業計劃)의 일환으로 동탑을 복원하기로 하고, 1988년「미륵사지(彌勒寺址) 동탑(東塔) 복원(復元) 설계단(設計團)」을 구성하여 1989년 12월까지 복원설계안을 작성하여 지도위원 및 실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고 한다.[10]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미륵사지동탑 복원설계보고서(彌勒寺址東塔 復元設計報告書)』에는 동탑 복원에 대한 이 당시의 사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한정된 관계문헌과 더불어 이러한 동탑유물의 부족은 동탑의 형태 추정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므로...서탑의 연구와 실측은 필수적이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서탑마저도 그 형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탑의 원형을 추정하기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석탑의 시원인 서탑을 해체하면서 정확한 실측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석탑의 시원인 석탑을 해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한 부분만 실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아쉬움을 남겨야 했으며 후대에 서탑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행된다면 더 정확한 자료가 얻어지리라 기대해 본다.[11]

미륵사지(彌勒寺址) 동탑(東塔) 복원(復元)에 관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탑이 복원되어야 할 당위성(當爲性)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문화재 복원이 뜻하는 것에 대하여 냉정하게 논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간행한 『미륵사지동탑 복원설계보고서(彌勒寺址東塔 復元設計報告書)』에는 미륵사지 동탑 복원에 따른 당시 지도위원들의 의견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김정기 선생은 의견서 "익산 미륵사지 동원석탑 복원계획에 대하여"에서 발굴된 "석재(石材)들의 검토와 현존 서원(西院) 석탑을 참고하여 거의 완벽한 동원(東院) 석탑의

10) 최종안은 설계단이 동탑부재를 근거로 하여 3개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도위원회의서 위원들의 최종 자문을 받아 1, 2, 3안중 1안으로 최종 설계안을 결정하고 있다. 文化財管理局, 『彌勒寺址東塔復元設計報告書』, 1990, pp.21, 27, 29.

11) 文化財管理局, 위의 책, 1990, p.85.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원 석탑의 복원 건립이 논의되고 계획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복원된 그 석탑 자체로서는 문화재라고 하기 어려운 것을 복원건립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비록 세부 부재 제작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원 석탑을 복원 건립하므로서 서원 석탑의 미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또 미구에 풍화 파손이 진행되어 원 모습을 크게 잃게 되는 서원 석탑에 대신하여 그 모습을 남길 수 있게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석탑의 복원건립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은 야외 석조문화재의 풍화 멸실에 대한 차선적인 한 보존대책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아울러 동원 석탑을 복원건립 함으로써 우리 나라 시원(始源) 석탑의 완전한 원래의 모습과 그 세부 기법 등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한 후, "건립 위치는 동원석탑과 바로 그 자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12]

진홍섭 선생은 먼저 동탑의 건립위치에 관하여 "동탑을 동탑자리에 건립할 경우 현존하는 기단부에 대한 보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강작업은 자연 현존 유구의 파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될 경우 백제시대 석탑 기초의 귀중한 유례를 소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고, 추가의견으로 "동탑의 건립은 지금 세우지 않아도 후회할 일은 아니므로 차라리 그 예산을 익산지구, 또는 더 넓게 마한 백제시대 유적의 시급한 기초 조사에 전용하고 동탑의 건립은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면서 추후의 사업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13]

황수영 선생은 "복원되는 신탑(新塔)은 마땅히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현 동탑지 바로 위에 재건함을 불가하다"고 하며 황룡사지에 9층목탑을 구탑지(舊塔址)에 복원하는 안이 나왔을 때 관계위원 전원이 반대하여 계획이 보류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오히려 "이곳 미륵사지의 서탑지는 잔존하는 지상이나 지하의 탑재(塔材)나 유구 등이 원형대로 보존됨이 보다 바람직하다." "지하매장으로 보호된 유형무형의 삼국시대 최대의 석탑기(石塔基)를 오늘 파괴하려는 우(愚)를 신탑 건립이란 명목으로 강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한다.[14]

김원룡 선생은 "그간 발굴을 포함한 부재들의 정밀조사에 의하면 동탑은 그 양식이나 크기에서 모두 서탑과 다르고 서탑도 창건 당시와는 형식 구조가 바뀌어진 후대의 개수(改修) 경험체(經驗體)임이 밝혀져 복원 재건에 적지 않은 문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며, "동서 두탑이 서로 다른 형태였을 경우 동탑자리에 서탑을 복원 건립한다는 것은 서탑 보존의 취지에는 맞을지 모르나 엄밀히 말하면 미륵사 원상의 변경 또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한다.[15]

장경호 선생은 동 서탑 양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두 탑재의 차이점을 검토한 후, 동탑의 복원 문제에 대하여는 "동탑의 기법 및 양식은 현재 남아 있는 부재로서는 다르다. 그러므로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동탑부재의 복원으로 설계 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서탑의 기법을 따를 것인지 이다. 먼저 서탑의 기법을 따를 경우 백제탑의 원형을 보일 수 있고 현존탑과 비교할 때 낯설지 않은 백제탑으로 보일 것이나 한편 조사된 부재는 재사용될 수 없고 서탑이 본래 동탑과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12) 위의 책, pp.46-49.
13) 위의 책, pp.51-52.
14) 위의 책, p.54.
15) 위의 책, p.56.

고증에 미비점이 우려된다. 다음 현 동탑부재로 복원을 할 경우 고증은 거의 확실하나 백제 석탑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 후 서탑과 비교할 때 시감(視感)이 크게 다르므로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될 것이다."는 견해를 보인다.[1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륵사지(彌勒寺址) 동탑복원(東塔復元)에 대하여 지도위원(指導委員)들은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굴된 석재와 서탑을 참고로 하여 "거의 완벽한" 동원(東院) 석탑의 복원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원 석탑을 복원 건립하므로 서원 석탑의 미래의 모습을 유추할 수"있고, 이는 야외 석조문화재의 풍화 멸실에 대한 "차선적인" 한 보존대책일 뿐아니라, 교육적 효과 적지 않기 때문에 동탑을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실제로 동탑지에서 나온 부재 1,200여 점 중에서 형태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부재는 349점이었다.[17] 발굴자료를 가지고 "복원도(復元圖)"를 설계하여 원 모습을 추정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탑 부재 일부를 발굴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復元)"이라는 단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동탑은 복원되었다. 그러나 미륵사지 동탑은 엄밀히 말해서 복원이 아니라, 옛날 어느 시기에 있었던 미륵사지 동탑을 그럴듯하게 닮게 만든 "신탑(新塔)"을 미륵사지 동탑자리에 "신축(新築)"내지는 "재축(再築)"한 탑이다.

이제 서탑과 1,400년이라는 시간을 격하며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그리고 상반된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서 있게 된 신축된 동탑은 옛 동탑 부재 일부를 사용하여 세워지기는 했지만 엄연히 이 시대에 세워진 석탑이 되었으며, 이 시대를 반영한 석탑이 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석탑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시대의 산물도 아니다. 미륵사지 동탑은 오히려 Hanna Jedrzejewka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에서 잘못된 결과는 무지(無知)의 연습이었다고 변명될 수 없다"고 명시한 문화재 보존 윤리강령 요강을 곱새기게 하는 산물이 되었다.[18]

문화 유산에 어린 전통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모태인 동시에 그 터를 통하여 지나간 역사 속에 서 있었던 실물을 상상의 세계로 그려 볼 수 있게 한다. 미륵사지 동탑이 그 자리에 신축되어 들어서므로 해서 미륵사지는 본래 사찰의 모습에 대한 건축적(建築的) 상상력(想像力)을 죽였고, 나아가 새로운 창조(創造)의 가능성(可能性)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상력에 제동(制動)을 걸었다.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실제 측정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연상적으로 기억과 상상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건축(建築) 체험(體驗)은 전혀 다른 것이다.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 특히 그 중에서도 건축유구(建築遺構)가 주는 의미(意味)와 가치(價値)의 중요성(重要性)이 대두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고, 진짜와 모조품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모조품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후대 사람에게 진짜처럼 느끼게 하자는 발상이 있다면 이는 금기시 해야 할 사항이다.

---

16) 위의 책, pp.61-62.

17) 동탑을 복원할 경우, 복원할 탑을 원 유구에다 설치할 것인가 또는 다른 곳을 이용할 것인가의 복원 위치 결정 문제를 비롯하여 구부재의 재사용 여부, 또 구부재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구재를 사용하고 신재를 사용하고 신재를 보충했을 때에 나타나는 질감과 색상의 차이 등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백찬규, 「익산 미륵사지 동탑 복원에 관한 소고」,『건축역사연구』, 1 (1992. 6.), 한국건축역사학회, pp.424-426에 소개되어 있다.

18) 백찬규, 위의 글에서 재인용, p.425.

미륵사 동탑 복원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에 손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들만이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한다. 선대(先代)에 살았던 사람도, 후대(後代)에 살 사람도 그 권리(權利)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 복원은 그 시기(時機)를 놓치면 실행할 수 없는 군사작전(軍事作戰)과 같은 것과는 다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복원하겠다는 자세는 문화재 복원에서 첫째로 꼽아야 할 금기사항이다. 시간이 흘러 관계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또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도입됨으로 해서 차선책(次善策)이 아닌 최선(最善)의 복원(復元)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상 안동 봉정사 극락전 해체 수리나 익산 미륵사지 동탑 복원은 우리들에게 건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고, 특히 복원이 갖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많은 역사문화 유적, 유구 가운데 복원대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20]

## 3.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관리(管理)와 신축(新築) 및 관광지화 문제(觀光地化 問題)

부여 동남리 정림사지(定林寺址)에는 백제시대의 5(층석탑)層石塔, 금당(金堂)터, 강당(講堂)터와 고려시대의 석불좌상(石佛座像)이 남아 있다.

이 정림사지는 1979년, 1980년 실시된 발굴조사에 의하여 가람배치(伽藍配置)와 성격(性格)이 밝혀졌다. 정림사지가 사적지로 지적되자 충청남도에서는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지 정비를 끝내고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사찰을 복원키로 하고 사지 중심부 3천여 평의 대지에 남에서부터 중문(中門) 석탑(石塔) 금당(金堂) 강당(講堂)을 순서로 남북(南北) 일직선상에 세우고 중문 앞에 두 개의 연지와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을 축조하는 기본설계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21]

그런데, 지금 정림사지에는 강당터라고 추정되는 위치에 정림사지 "석불좌상 보호각(강당)"건물이 신축되고 있다.(사진 3참조) 안내판에 의하면 강당터 유구를 바탕으로 정면 7칸, 측면 3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79.63평 규모의 건물이 들어 설 모양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신축건물을 주심포 하앙식, 굴도리 9량집 가구에 첨차는 교두형, 단청은 고식 모로단청, 기둥은 원주 배흘림으로 한다는 내용이다.[22]

---

19) 미륵사지 동탑지에서 발굴된 석재들만 하더라도 그 부재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더 정확한 복원도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로부두르 사원의 복원은 좋은 실례이다. 미륵사 동탑 신축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닌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연관된 실례로 충남 예산 수덕사에 신축된 강당 건물을 들 수 있다. 신축된 강당 건물로 대웅전 건물이 지니는 건축적 가치는 엄청나게 위축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 복원과 연관하여 송광사 중창불사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 복원이 아닌 중창은 사찰 조용을 새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뜻하며 그 중창 불사가 이 시기의 건축으로 평가를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건축적 성취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우리시대의 한옥은 어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져야 할 것이다.

21) 동아일보 1990년 12월 15일(화). 또한 조선일보 1990년 3월 24일(토)자에 의하여 충남도는 "복원방식에 대해 학계와 고건축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정림사 유구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 똑 같은 넓이와 크기로 절을 새로 짓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22) 안내문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2. 6. 18-1993. 12.이고, 예산은 1,261,237천원이다.

이와 같은 건물 신축을 통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는 역사문화환경으로서 정림사지를 발굴 당시의 유구대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 백제 문화의 한 단면을 읽게 하였어야 한다. 특히 만약 정림사지에 옛 건물을 복원(실제로는 신축)하는 이유(理由)가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던 백제문화(百濟文化) 유산(遺産)에 대한 갈증(渴症)의 해소(解消)"를 위하여, 그리고 "백제(百濟)를 문화(文化)의 모국(母國)으로 여기는 일본인(日本人) 관광객(觀光客)들에게 모처럼 보여 줄 백제유산(百濟遺産)을 가시화(可視化)"하기 위하여 였다면 당연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뜻하는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실제로는 강당터에 강당을 복원하면서 마치 "석불좌상 보호각"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만이며 모독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정림사를 복원하는 단계적 과정으로 강당건물을 짓고 있다면 적어도 보호각 건물이라는 공사명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심포 하앙식 건물로 신축하는 당위를 밝혀야 한다. 강당터에 보호각 건물이 완공되면 장차 금당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 건물이 들어서고, 나아가 사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랑 등 보호각 건물이 지어질 것 같은 우려 때문이다. 건축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할 행정당국의 원칙과 시각이 무엇보다도 아쉬움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우리는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保全)과 관광지(觀光地) 개발(開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韓國民俗村)은 1973년 착공되어 1974년 완공된 민속촌이다. 이 한국민속촌의 건립취지가 1975년도 대학입학고사문제로 출제되어 정답에 대한 시비가 있었는데, 이는 문화재 보존과 관광지 개발의 병행에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사건이었다. 국민윤리 사회과 문제 A형 17번 문제인 용인민속촌을 건립하게 된 근본취지를 묻는 질문에서 출제자들이 제시한 정답은 "라. 우리의 고유한 생활민속유산을 한곳에 모아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가. 우리의 고유한 생활민속을 전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시비 끝에 2개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케 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민속촌의 건립은 "조선시대 후기의 한 시기를 택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하고자"[23]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늘날 설명되고 있다.

관광(觀光)이나 교육(敎育)의 목적으로 옛 건물을 어느 시기의 상황에 맞추어 재현(再現)하는 것과 현존하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있을 수도 있었던, 그리고 부정확해도 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어느 시기에 있었던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에 수반되는 과제는 과거의 건축을 오늘날 그럴듯하게 재현, 재축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물려받은 문화재를 가능한한 훼손시키지 않으며 잘 유지하여 후손에게 부끄럼없이 물려주는데 있다. 현존하는 건축 문화재를 보전하면서 교육용으로나 관광용으로 현대적으로 활용하며 개방할 수는 있겠지만 엄격히 보아 문화재 보존과 관광지 개발은 구분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다.[24]따라서 예로서 관계 행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58.

24) 윌리엄스버그의 유지 관리는 문화재의 교육과 관광측면에서 좋은 선례를 제공한다. 록펠러 2세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복구된, 미국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유서깊은 고장인 이 곳은 170에이커의 넓이에 80동이 넘는 18세기 그대로의 건물과 100개가 넘은 정원, 영국 식민지 당시의 정부 청사, 관저, 교회와 감옥 등 관공서건물과 함께 20년 동안 각종 가옥과 관공서 건물과 상점 공장(工匠)이 재건되었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상업

공주 부여 익산지역의 백제문화유적 종합 복원 정비 계획 같은 것도 유적의 원형보존 및 정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발굴작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 할 때 참다운 의미의 문화재 보호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문화재(文化財)의 현대적(現代的) 활용(活用)에 대하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은 그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려는 것은 사실 문화재 보존을 통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의식(歷史意識)과 소속감(所屬感)을 갖게 하고 동시에 문화재가 있는 장소(場所) 및 그 주변(周邊)이 더욱더 여러 측면에서 가치있고 의미있는 역사문화환경을 지닌 장소가 되어 새로운 가치(價値)가 발견(發見)되고 창출(創出)되도록 하는데 있다. 문화재 보존이 건축가(建築家), 도시설계가(都市設計家), 정책입안가(政策立案家) 등 관련전문가들에게 참다운 의미의 전통계승이 가능한 단서로 받아들여져 하나의 건축문화재, 하나의 문화재보전지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형식(建築型式), 도시형식(都市形式)이 나타나는데 까지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문화재 건축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일부로 살아 있는 것일 때 가치 있는 것이며, 건조물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의 보존+훼손 부분의 보강+현실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25]

이런 관점에서 가회동한옥보존지구(嘉會洞韓屋保存地區)의 지정(指定)과 해제(解除)는 우리에게 건축역사문화환경 보전의 새로운 국면을 읽어야 할 교훈을 준다.

지금은 전면 해제되어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촌마을로 불리던 가회동 한옥보존지구는 1983년 4월 전통계승, 우리 것 찾기의 열풍에 발맞추어 집단문화재(集團文化財)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26]그러나 서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에 견뎌내지 못하고 1991년 1월 한옥 보존지구를 부분 해제하였고, 그후 1991년 6월 전면 해제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지구환경보전지구(地區環境保全地區)로 정한다고 목표를 수정 발표하였다. '한옥보존(韓屋保存)'에서 '환경정비(環境整備)'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지역이 정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가라는 질문에 서울시 당국은 "서울시내 전통한옥으로 보존할만한 곳은 이 지역밖에 없기 때문"[27] 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다. 보존지구내 가옥들에 대해 건물외형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증축(新增築)도 당국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등 각종 건축행위(建築行爲)를 규제(規制)하는 대신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을 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의 역사문화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가회동과 같은 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가회동한옥보존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화재 보존 방법을 못 만들어서 현실에 굴복한 결과였다. 또한 직접 연관된 서울시 당국과 문화재관리국 사이에도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

---

적인 냄새가 적으며, 오히려 자기 조상들의 생활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정열을 쏟고 있음을 알게 한다.

25) 장경호 : 「건조물 문화재의 보수 복원 방향」, 『문화재』, 제11호, 1977. 12. p.33.

26) 가회동한옥보존지구의 법정 동은 자회동, 삼청동, 사간동, 계동, 원서동 등이다. 당초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회동을 위시한 16만 3천평으로서 이 곳에는 한옥 1,518채를 포함, 모두 2,756채의 가옥이 있었다.

27) 한겨레신문, 1990년 3월 18일(일) 10면.

지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점도 문제점이었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는 문화재는 물론이고 지금도 도시나 마을의 한부분이면서 그 기능(機能)을 상실(喪失)하였거나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한 부분을 현대적(現代的)으로 활용(活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재의 경우 그것을 일반에게 개방(開放)함으로서 건물의 수명(壽命)을 연장(延長)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적(敎育的)인 효과(效果)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서원(書院)이나 향교(鄕校)의 개방(開放)과 활용(活用)은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고건축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그 밀도를 더해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현재에 보전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은 그러한 맥락과도 통한다.[28]

이와 함께 옛 건물이 기능이 바뀌어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이 문화재 보존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도시나 마을은 정말 활기를 찾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현대적 기능을 가진 건물을 개입시킴으로서 도시, 마을이 역사적으로 중첩되게 할 수 있다. 황폐해 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것, 또는 작게는 학생들이 없게 된 시골 국민학교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 등도 이러한 문제에 속한다. 이는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 개념(槪念)의 확대(擴大)를 뜻하기도 한다.

이와 연관되는 좋은 실례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기라델리 광장(Ghirardelli Square) 개조에서 찾을 수 있다. 기라델리 광장은 쵸콜렛 공장 (1893-1916 건립) 이었던 버려진 건물을 1962년 Willaim M. Roth가 구입해서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에 맞는 건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1979년 개조하여 가게, 카페, 레스토랑, 연극공연장으로 개조하여 성공시킨 대표적인 것으로 자주 거론되는 본보기이다.[29] 이 사업의 성공은 바로 그 옆의 공장이었던 Canary를 구입해서 개조 성공케 하여,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명소가 되어 있다. 죽은 도시의 한 부분을 살린 것이다.

옛 건물은 그 자체의 기능이 다하므로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목조건물(木造建物)은 그런 측면에서 가변성(可變性)이 높다. 형태(形態)는 기능(機能)을 따른다가 아니라, 옛 건물도 오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30] 그래서 문화재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는, 도시설계, 마을설계를 선도하는 문화재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격리되어 높은 담 안에 쌓여 있어야 하는, 그런 죽은 물건이 아니다. 문화재는 우리 실생활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현재와 분리 격리된 과거는 있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날이 우리의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31]

---

28) 김동욱 : 「고건축의 복원과 문화재의 인식」, 『공간』, 제222호, 1985. 12. p.113.

29) Charles Knevitt: Space on Earth - Architecture : People and Buildings, Thames Methuen, 1985, p.129.

30) Sigfried Giedion은 1955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다. 1920년대 건축가들에게는 19세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것이 중요과제 였으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통의 창조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건물을 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여야 한다. Charles Knevitt : 위의 책, p.129.

31) 金元龍: 앞의 글, p.8.

## 4.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과 도시설계 문제 (都市設計 問題)

정부가 1993년 8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조선총독부청사(朝鮮總督府廳舍)를 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도시의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 보전(保全) 관점에서 고려할 점들이 있다. 옛 조선총독부청사가 조선(朝鮮) 왕조의 정궁(正宮)이었던 경복궁(景福宮)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한 그 철거이유에 관한 당위성을 떠나 그 건물이 들어선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모습이라는 도시설계적(都市設計的)인 차원(次元)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 서울은 조선조(朝鮮朝) 이래 우리 나라의 도읍지로서 정치,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1994년이면 정도(定都) 600년을 맞게되는 역사도시(歷史都市)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얼핏 생각하기에 서울은 역사문화환경을 많이 지닌 자랑스러운 역사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도시 면면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와는 너무 거리가 먼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역사도시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도대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2]

이 기회에 옛 총독부청사를 헐고 민족주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면 그 현장의 중심부인 역사도시 서울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옛 조선총독부청사 철거와 함께 생각의 범위를 넓혀 검토하여야 한다.

일제(日帝)는 경복궁을 훼손하며 조선총독부 건물을 신축한 것과는 별도로 이미 서울 성곽(城郭)을 철거하고 새로이 도로를 내면서 도시구조(都市構造)를 개편(改編)한다. 종묘(宗廟)와 창덕궁(昌德宮)사이를 잘라내어 도로를 개설하는가 하면, 광화문(光化門)에서 남대문(南大門)으로 새로 직통 도로를 낸다. 그리고 경희궁(慶喜宮)에는 그들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창경궁(昌德宮)은 동물원(動物園)으로 바꾼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의 원래 모습은 변질(變質)되고 그 특성(特性)은 잃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옛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리는 역사도시 서울을 내세우려면 지금이라도 서울을 서울답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구(舊) 도심(都心), 즉 옛 서울인 한양(漢陽) 땅에 초고층(超高層) 현대건축(現代建築)을 무계획(無計劃)하게 세우는가 하면, 새로 개발한 강남 역시 그 성격이 불분명한 도시가 된지 오래다. 이 모두는 서울의 건축역사 문화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지금 세종로(世宗路)거리만 하더라도 그 도로의 방향, 즉 축(軸)은 경복궁(景福宮) 축(軸)에 맞게 된 것이 아니라 일제가 의도적으로 축을 비튼 옛 총독부 청사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하여 도로가 나 있다.(사진 4, 5 참조). 옛 경복궁과 그 주변에는 도시 전체의 모습과 연관되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광

32) 한국건축가협회 주최「歷史都市 서울 어떻게 設計할것인가」세미나에서 (1990. 11. 27)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못지 않은 오래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의 역사도시라 부르기에는 사실상 너무나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현존하는 유물도 단지 거대한 도시의 조직 속에 존재하는 占在物이며, 面으로서의 연속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김광현 : "歷史都市 서울의 反省과 歷史의 形象化")라는 주장이나 "서울로 말한다면 강북, 그 중에서도 문안지역, 특히 한옥보존지역이나 고궁들이나 역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외에는 거의가 역사의 흔적이 지워진 채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특히 지난 사반세기 동안 확대되어 오기만 한 강남, 외곽도시 들에서는 더욱이나 살릴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문화를 가꾸어 나갈 단서 들을 찾아내기 어렵다."(김진애 " 서울性과 역사性") 등이 그 예이다.

화문 남쪽으로 서 있던 육조건물(六曹建物)들은 경복궁(景福宮)과 조화(調和)되게 그 규모가 정해져 들어 서 있었다. 지금, 옛 총독부 청사를 헐면 그 부분은 세종로 주변의 고층건물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허(虛)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청와대(靑瓦臺) 건물은 경복궁 뒤 북악산(北岳山) 중턱에서 경복궁, 서울 도시구조와는 어울리지 않게 노출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또 문제가 있다. 일제가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훼손시킨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구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시는 다른 한편으로 경희궁(慶喜宮) 자리에는 그 터를 훼손하는 시립미술관(市立美術館)을 세우고 있다.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방향이 요령부득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행정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는 사안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떠나, 역사도시 서울 도심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와 연관된 모든 사안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검토해야 한다.

종묘(宗廟)앞 공원도 마찬가지다. 종묘는 당시 위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안녕(安寧)과 질서(秩序)를 조상께 비는 국가의 상징적(象徵的) 기능(機能)이 강조된 곳이었다. 그런데 그 앞 빈터에 주차장(駐車場)을 만들고 공원(公園)을 만들었다. “문화재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묘 앞 공원의 조성은 바로 우리의 문화재적 철학의 결여를 여실히 드러낸 처사”였다. 서울시는 종묘를 현재의 터에 그대로 보존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앞의 놀이마당과는 별개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고건축(古建築)은 울타리 안에서 파괴로부터 보호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는 그 문화재(文化財)의 성격(性格)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존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고려되어 그것이 현재에도 살아 숨쉬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종묘 앞 공원의 조성은 아직 우리에게 진정한 문화재의 가치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33]

이러한 사안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독립문(獨立門)의 이전, 현대건설(現代建設) 본사(本社) 사옥(社屋)이 들어 서게 된 경위, 바로 그 주변에 나중에 들어 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청사(廳舍), 가회동(嘉會洞) 한옥보존지구(韓屋保存地區)의 해제(解除), 최근에 이르러서는 혜화동로타리 주변에 올라가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등 등. 적어도 2,000년대를 향하여 옛 서대문(西大門)안, 즉 한양도성(漢陽都城)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제시를 서울시는 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차원에서도 옛 총독부청사 건물의 철거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은 어떤 모습을 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건축문화재보전(建築文化財保全)이나 보호정책(保護政策)은 서울 도시설계(都市設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서울이 역사도시(歷史都市)로서의 흔적(痕迹)을 찾기가 힘들다는 주장은 앞으로 서울은 어떤 모습을 해야할 것인가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서울이 지닌 역사 흔적의 실체(實體)를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왜 지금 역사도시라고 부르기 힘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옛 서울, 즉 사대문 안에는 아직도 역사적인 흔적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기 힘들게 되어

33) 김동욱 : 앞의 글, pp.114-5.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성곽, 기타 지역의 한옥들 등 그 면적은 대단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도시의 일부로 느끼지 못하고, 도시 속에 독립해 있는 섬과 같은 것으로,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즉 도시설계에 있어서 건축역사문화환경과 그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들이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게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문화재를 과거의 어느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존,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렀지, 오늘에도 살아 있는 도시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데, 그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이 기존의 문화재와 상관성을 가지는데 까지 힘을 쏟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문화재전문가(文化財專門家), 건축가(建築家), 도시설계가(都市設計家) 들이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하며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나간 시대의 고건축(古建築)을 하나의 단위건물(單位建物)로 파악하고 그 원형(原形)만 보존(保存)하려는 생각은 그 건물로 인해 나타나는 땅의 생명성은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껍질만을 남겨두자는 발상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발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이란 바로 단위건물의 차원이 아닌 그것과 연관되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전문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건축이 어떻게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를 고려한 보전문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환경이 갖는 기능은 이용가치라든가 실용가치 등 협의의 기능인 형식적이며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가치와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이 가진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으로서 이는 그것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이란 그 역사문화환경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상징성 등을 인식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전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 속에서 단위건물에 대한 보전이 이야기되어야 한다."[34]

## 5. 건축역사문화환경 보전(建築歷史文化環境 保全)의 개념 확대 필요성 (槪念 擴大 必要性)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문화재란 개념은 그 개념의 성립과정으로 보아 근대(近代) 문화정책적(文化政策的) 개념이며 특히 산업혁명이후(産業革命以後) 잉글랜드에서 천연자원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인 문화유산(文化遺産)의 손상(損傷) 파괴(破壞) 소멸(消滅)을 우려한데서 일어난 민간(民間) 자연보호(自然保護) 문화재(文化財) 보호운동(保護運動)이 마련해준 보호 정책적 개념이다."[35] 이와 같이 문화재란 개념은 근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근대이전의 사회에서는 문화재는 있었으나 문화재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문화재란 개념도 시대상황에 따라, 사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국가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근본적으로 목조(木造)로 된 전통건축(傳統建築)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문화재보호법은 이른바 근대(近代) 및 현대건축(現代建築)을 보호하는데 까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근대건축은 물론이고 현대에 새롭

34) 이상해 : 「역사적 문화환경의 생태학 : 그 보전이념과 방법에 대하여」,「역사문화환경보전과 목조건축」, 한일국제연구지회, 1992. 5. 2. 장소 : 제주 愚堂도서관 강당, pp.35-6.
35) 문화재관리국 : 『우리나라의 문화재』, 1970, p.16.

게 이루어지는 건축물(建築物)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더구나 그 보전(保全)에 관한 문제를 현재성(現在性)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문화재관계 법규가 연대를 한정한 과거의 건축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법규자체의 폐쇄성(閉鎖性)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의미의 건축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법으로 되는 자기모순적(自己矛盾的)인 것으로 될 위험성이 있다.

198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재의 정의에 "우리 나라의.."라고 지칭한 단서를 삭제하고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人類文化)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물(建物)을 주대상(主對象)으로 한 것도 우리 나라의 것이 아닌 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뜻으로서,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쪽으로 그 개념을 확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법개정의 근본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문화재 용어가 지칭하는 문화재(文化財)의 개념(槪念), 보호대상(保護對象)의 범위(範圍)에 변화(變化)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왔던 과거의 목조(木造) 한식건축(韓式建築)만을 문화재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에서 현대건축(現代建築)을 포함한 근대건축(近代建築)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근대건축도 우리가 보호하여 후대에 물려줄 문화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서는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 근대건축물은 문화재적 가치(문화재보호법상)는 적으나 역사적 건축적 실용적 가치가 높다. 건축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정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36] 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에 따른 당연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식민시대, 우리 손으로 설계되어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만들지 않은 건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시대에 문화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 나아가 건축가들이 새롭게 짚고 넘어 가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일제(日帝) 식민지(植民地) 시대(時代)에 대한 반감, 피해의식은 반사적으로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시기의 건축은 건축적(建築的) 가치(價値)로서 평가할 것이 있는지, 단순히 건축사적(建築史的)으로 의미(意味)가 있는지, 오점(汚點)을 남긴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건축은 사라져 버려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 관련자료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예로서 서울에 있었던 근대건축물로서 박길용(朴吉龍) 설계의 화신백화점(和新百貨店)(1987년 철거, 1935-1937)이나 탁지부(度支部) 설계의 구(舊) 경기도청사(京畿道廳舍)(1989년 철거, 1909-1910) 등의 철거는 건축구조적(建築構造的)인 문제와 연관되는 내구성(耐久性) 때문도, 혹은 이와는 달리 도시경관적(都市景觀的)인 차원에서 철거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좀 더 현대로 올라와서 볼 때 주한(駐韓) 불란서 대사관(佛蘭西大使館) 사무동(事務棟) 건물(建物)지붕의 큰 변형(變形)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사진 6참조).

또한 한국현대건축이 장차 부닥칠 현안에 대하여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현대건축

36) 김정신 : "도심부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도시 및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1993. 3. 20, p.12.

의 보존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그러하기 위하여 중요 한국현대건축에 대한 현황조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헐려져 가고 있는 중요 근(近)·현대건축물(現代建築物)을 파악해야 한다. 도시 팽창, 도시 재개발에 대한 건축가, 문화재 당국자의 역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례로 건축가 김중업(金重業)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한국현대건축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구(舊) 제주대학(濟州大學) 본관(本館)이 심한 훼손상태에 있어 붕괴, 철거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 개최된 「(구)제주대학 본관 보전을 위한 세미나」의 개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37] 특히 구 제주대학 본관의 경우는 건물자체의 사회적(社會的) 수명(壽命) 때문에 철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構造的)인 안정성(安定性) 때문에 야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또다른 보존문제의 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건축가들과 관계인사들은 이 건축의 역사성을 재규명하고 새롭게 재생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확대된 개념의 문화재 보전차원에서 구 제주대학 본관을 보전하려는 시도였으며, 1960년대 한국건축을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사의식을 심어 준 것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기와집 시대의 건축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어진 건축 중에서 한국건축문화사상 중요한 건물들에 대한 관리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문화재관리국의 기능과 관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재 보호대상에 근대건축을 포함하는 문제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 개념을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통건조물보존법(傳統建造物保存法)」의 제정은「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동시에 전통건조물을 보호하면서 그 보존지구를 확대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화재(文化財) 개체(個體)에 대한 것보다는 환경문화재적(環境文化財的)인 면이 강조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또한 과거지향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를 꼭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적(現在的) 활용(活用)도 중요시 하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문화재를 현재에도 살아 있는 것으로 할 때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물은 시간을 초월하여 다음 시대의 사람들도 그 건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역사적(歷史的) 문화환경(文化環境) 보전(保全)의 현재적(現在的) 창출(創出)이라는 차원에 속한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는 보존 보호하여야 할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닌 것과 오늘의 삶의 현장의 한 부분에 속하는 문화재적인 성격을 띄는 건조물들이 있다. 이렇게 상이한 성격을 띈 문화재에 대한 현재적인 중요성은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어떤 것들은 그 원형(原形)에 대한 일체(一切)의 변형(變形)이나 손상(損傷)을 가하지 않고 보존(保存)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 건물에 새로운 생명(生命)을 불어 넣음으로써 현재적(現在的)인 새로운 삶이 그 건물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면서 건물(建物)도 보전(保全)되게 하여 옛 것 속에 역사의 잔영이 남아 있게 하면서 오늘 그리고 후대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그 주변에 새로운 건축이 들어섬으로 해서 과거(過去)와 현재(現在)가 공존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요약

37) 「(구)제주대학 본관 보전을 위한 세미나」 1993년 2월 5일(금), 제주하니관광호텔,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하면 우리는 어느 건축(建築)의 기능적(機能的)인 생명(生命)은 다하였으나 그 건축이 지니는 역사적(歷史的)인 가치(價値), 즉 문화재(文化財)로 보호(保護) 보존(保存)되어야 할 건축(建築)(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a buiding)과 오늘날에도 건축적인 가치는 물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건축(architectural historical context)은 그 맥락 속에서 전자와 구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건축가들이 역사적인 건축물로 이루지는 역사문화환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건축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이란 단위(單位) 건축물(建築物) 하나에만 국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이 있는 터와 주변 공간, 나아가서는 도시나 마을 전체와 상관되게 보전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위하여는 역사적 문화환경을 이루는 단위건축물(單位建築物) 하나 하나가 그 역사문화환경의 중심(中心)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나 마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바로 단위건물에 대한 가치도 살리며, 동시에 그 장소나 공간, 나아가 도시나 마을 전체가 의미를 가지게 한다. 뿐만 아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삶까지도 의미있게 하여 준다. 단위건축물 자체가 초라하다는 이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파괴, 철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더 좋게 도시(都市)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단서(端緖)를 잡아야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문화환경의 아이덴티티(identity)란 이러한 보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말한다. 이는 역사적 문화환경 자체가 현재에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뜻한다. 한 건물이 갖는 역사성이라는 시간성을 현재에 존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에 자아내는 창조적 가치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건축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오늘의 도시환경이 우리의 역사적 문화환경으로 말미암아 '개발(開發)'의 장애(障碍)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환경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도시(都市)가 직면하고 있는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에 대한 어려움과 정체성(停滯性)을 극복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재관계법이외(文化財關係法以外) 역사문화환경보전법(歷史文化環境保全法) 같은 법규를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확대(擴大) 개편(改編)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구(機構)의 설치(設置)도 될 수 있다. 지금의 문화재관리국관계법에는 역사문화환경(歷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이나 이를 새롭게 재창조(再創造)하는 기능(機能)이나 업무(業務)는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은 또한 오늘날 한국의 많은 도시(都市)나 취락(聚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개발과정(開發過程)에서 일어나는 개발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사이를 조정할 기능도 물론 가지고 있지 않다.

## Ⅲ. 결론(結論) :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과 복원(復元)의 과제(課題)

지금까지 건축문화재 및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에 따른 현재적 과제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의 해체(解體) 수리(修理)와 복원(復元) 문제(問題)를

봉정사 극락전의 해체수리 결과를 실례로 들어 건축문화재에 대한 복원이란 곧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면 그 원형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건축의 맥락(context)도 파악하여 복원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원"이전에 원래의 모습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복원적 고찰을 한 후 "복원도"를 제시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로 건축역사문화환경지(建築歷史文化環境址)의 유구(遺構) 발굴(發掘)과 복원(復元) 문제(問題)에 대하여 익산 미륵사지 동탑 복원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미륵사지 동탑이 복원되어야 할 당위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거의 완벽한" 복원이 엄밀한 의미의 복원을 뜻하는 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유구의 발굴작업은 곧 그 것이 "복원"이라는 단계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유구가 주는 건축, 교육적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많은 역사 문화 유적, 유구 가운데 복원 대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문화재관리 실무편람」에도 명시되었듯이 "문화재 보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은 금물이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연구검토와 고도의 기술을 동원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38]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훼손, 파괴, 철거위기에 봉착한 역사적인 건물을 구제하여 건축적인 생명을 연장하자는 뜻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건축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졸속뿐 아니라 "파괴적 복원"은 무엇보다도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복원이라는 행위를 통한 대리건축, 모방행위, 무목적 복원은 금물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셋째로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의 관리(管理)와 신축(新築) 및 관광지화(觀光地化) 문제(問題)에 대하여 부여 정림사지 강당터에 짓고 있는 "석불좌상 보호각" 건물을 실례로 들어 이야기하면서 건축역사문화환경으로서 정림사지를 지금의 유구대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곳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 백제 문화의 한 단면을 읽게 하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새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재의 현대적 활용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의 진실한 뜻과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재를 우리 실생활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저 맹목적으로 문화재니까 애호해야 한다는 이론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39] 이러한 논의는 건물이 기능이 바뀌어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도시나 마을은 활기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로 건축문화환경(建築文化環境)의 보전(保全)과 도시설계(都市設計) 문제(問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건축역사문화환경과 도시설계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여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즉 옛 총독부청사를 헐고 민족주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면 그 현장의 중심부인 역사도시 서울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를 옛 총독

38)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1984, p.48-49. "석굴암 보수에 있어서도, 새로운 석굴암을 만들기는 차라리 쉬워도 현존하는 석굴암을 원형그대로 보수하는데는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했으며 그 의견에 서로 異見들이 있었는가를 알면 족하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정재훈 : 앞의 글, p.87.

39) 金元龍 : 앞의 글, p.8.

부청사 철거와 함께 생각의 범위를 넓혀 생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전문가, 건축가, 도시설계가들이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하며 대처해 나갈 문제임을 언급하였다. 이는 역사적 문화환경(文化環境) 보전(保全)의 현재적(現在的) 창출(創出)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歷史文化環境) 보전(保全)의 개념(槪念)을 확대(擴大)할 필요성(必要性)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전통건축(傳統建築)뿐 아니라 근대(近代) 및(현대건축)現代建築까지를 문화재 보호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문화재 보호 개념을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개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건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을 보호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이 더 의미있는 장소로 되도록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중첩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중첩은 곧 그 장소에 그 건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며, 이는 건축문화재를 역사문화환경을지니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도시, 마을이 지니는 의미, 장소가 지니는 의미는 곧 역사적인 흔적이 중첩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며, 건축이란 장소를 떠나 들어 설 수 없고, 그곳과 합쳐진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이란 장소를 떠나 들어 설 수 없고, 그곳과 합쳐진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이란 바로 시간, 공간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 및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에 대한 사안들을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건축문화재의 복원이라는 행위가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게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건축문화재를 겉치장하는 식의 보존 및 보호자세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시 이야기 하면, 건축문화재의 보전, 보호는 적어도 관주도형 일회적인 행사나 전시위주의 문화정책의 하나로 이해되어서도 안되고, 문화재관계 정책이 어느 누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문화재 보존이라는 주장아래 과거의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검토하여야 하고 동시에 목조건축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원은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냉정히 생각하여야 한다. 건축문화재 보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세대가 문화유산의 마지막 상속자가 아니라 과도적 관리자라는 철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가지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향유권은 일부 전문가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자는 그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의 문화재 관련 전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문화재 관리, 보호, 연구를 통한 자료의 축적과 문화재 보존 보호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문화재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40]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 시책 방향으로 "첫째, 문화재의 원형의 보존정립을 기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둘째, 이 일을 위하여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여 민족의 문화사를 정확히 밝혀 나가며, 셋째, 문화재의 보급 선양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넷째, 문화재관리를 위한 전문위원의 양성훈련을 기하여 문화재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두고있다."는 정태진(鄭泰辰) 선생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41]

40) 정재훈선생은 문화재관리의 단계적 분류로서, 1) 조사, 2) 수집, 3) 연구, 4) 분류정리, 5) 보존, 6) 전시, 7) 보급을 제시하였다. 정재훈 : 앞의 글, p.88.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 건축문화재를 전담할 부서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문화재관리국의 기능과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관계법이외(文化財關係法以外) 역사문화환경보전법(歷史文化環境保全法) 같은 법규를 새로 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확대(擴大) 개편(改編)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구(機構)의 설치(設置)도 될 수 있다. 이제 "문화재관리 행정은 골동품이나 다루고 옛 것이나 찾는 고루하고 케케묵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매도"[42]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사진 1 봉정사 대웅전 일곽 모습

사진 2 미륵사지 동탑 보건 현황

41) 鄭泰辰 : 「문화 보존관리의 施策方向」, 『문화재』, 제21호, 1988, p.2.
42) 위의 글, p.16.

사진 3. 정림사지 석불좌상 보호각 시공 모습.

사진 3 정림사지 석불좌상 보호각 시공 모습

사진 4. 옛 지도상의 경복궁, 경희궁 일대

사진 4 옛 지도상의 경복궁, 경희궁 일대

사진 5. 경복궁 근정전에서 본 옛 조선총독부 청사

사진 5 경복궁 근정전에서 본 옛 조선총독부 청사

사진 6. 지붕이 변형된 주한 프랑스대사관 사무동

사진 6 지붕위 변형된 주한 프랑스대사관 사무동